

외국인직접투자제도 안내

2002. 3

외국인투자지원센터

*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된 여러가지 제도와 규정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 일부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를 하실 때 반드시 관련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www.investkorea.org로 방문하여 주십시오.

* Copyright 2002 대한민국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가 모든 권리를 보유함.
서울특별시 염곡동 300-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내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종합행정지원실(우.137-170)

* 전화 : (82 2) 3460 7545

※ 본문에 표시된 법/영/규칙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임

목 차

1. 개 요

가.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1
(1) 외국인직접투자의 정의	1
(2) 외국인투자가 및 출자목적물	2
(3) 투자금액 및 비율	5
나. 외국인투자관련 법령	5
다. 외국인투자 대상업종	6

2. 외국인투자의 보호 및 자유화

가. 대외송금의 보장	11
나. 내국민과 동등대우	11
다. 외국인투자 자유화	12

3. 외국인투자 신고 및 인·허가

가. 외국인투자신고의 기본원칙	13
(1) 사전신고	13
(2) 사후신고	13

나. 유형별 외국인투자절차	14
(1)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14
(2)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22
(3)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29
(4) 합병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31
다. 공장설립 및 사업개시에 필요한 인·허가 민원사무	33
(1) 외국인투자관련 인·허가 민원의 처리	33
(2) 유형별 민원사무 (직접처리/일괄처리/개별처리 민원사무)	35
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45
(1) 외국인투자기업의 변경등록	45
(2) 관세등을 면제받아 도입한 자본재의 처분	45
(3)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사업 영위	46
(4) 외국인투자기업의 다른 국내기업 주식의 취득	47
(5) 주식등의 양도 및 감소신고	48
 4.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가. 조세지원	49
(1) 조세지원제도의 의의	49
(2) 조세감면 대상	49
(3) 조세감면 세부내용	52
(4) 조세감면 신청 및 결정절차	55
(5)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58
나. 국·공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감면	60
(1) 국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감면	60

(2) 공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감면	62
(3) 국·공유재산의 매각·임대 및 임대료감면 신청절차	62

다. 관세지원	63
(1) 관세감면	63
(2) 수입통관상 특례	65
(3) 자본재출자에 관한 특례	66
(4) 자본재 사후관리	67

라. 기 타	69
---------------------	----

5. 외국인투자지역

가.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관리	70
(1) 지정기준	70
(2) 지정권자	71
(3) 지정절차	71
(4) 개발·관리	71
(5) 지정해제	72

나.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72
(1) 조세감면	72
(2) 임대료·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및 지원 혜택	72
(3) 외국인투자지역 개발에 대한 지원	73
(4)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타법률 적용 배제	73
(5) 무역자유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73

■ < 별 첨 > 외국인직접투자관련 서식	74
---	----

1. 개 요

가.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1) 외국인직접투자의 정의

-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
 -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
 - 투자금액(2인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영 제2조제2항 단서)
 -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이상을 소유하는 것 (영 제2조제2항제1호)
 -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미만을 소유하면서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 제2호제2항제2호)
 - 가.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 나.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 다.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 연구개발 계약

■ 장기차관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

-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 자본출자 관계가 있는 기업 (영 제2조제3항)

- 해외 모기업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해외 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 가. 해외 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나. 해외 모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2) 외국투자가 및 출자목적물

■ 외국인의 의미 (법 제2조제1항제1호)

- 외국의 국적을 보유한 개인
 - 대한민국의 국민중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체류허가를 취득한 경우도 외국인의 범위에 포함 (영 제3조)
 - 국내에 준영구적으로 체류하는 화교 (체류자격 거주(F2))의 투자는 외국인투자에서 제외
-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된 외국법인
- 국제경제협력기구

-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IFC(국제금융공사), ADB(아시아 개발은행) 등 대외 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 **외국투자자의 정의 (법 제2조제1항제5호)**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주식 및 지분을 소유한 외국인을 의미

■ **외국투자기업의 정의 (법 제2조제1항제6호)**

-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

■ **출자목적물(법 제2조제1항제7·8호)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해 출자하는 것**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 자본재
 - 선박, 차량, 항공기 등을 포함한 산업시설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품, 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 어패류
 - 기타 주무부장관이 당해 시설의 최초 시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업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배당금)
-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 및 사용에 대한 권리
 - 지적재산권 :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와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배치 설계권(영 제2조 제4항)

-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에 의해 평가된 산업재산권등의 가격은 공인된 감정가로 인정
- 기술평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환경관리공단, 기술표준원, 산업기술정보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 등의 출자시 유의할점 : 사용료소득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될 수 있으므로 출자목적물이 고도기술등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에 의거 기술도입 대가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신청을 하여야 조세면제를 받을수 있음

- 외국인의 국내지점 또는 사무소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그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당해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당해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잔여재산
- 해외 모기업 또는 당해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이상의 차관 및 기타 해외차입금의 상환액
-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 법인의 주식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부동산

- 기타 내국지급수단
-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과 부동산처분 대금

(3) 투자금액 및 비율

- 외국인투자 금액(2인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영 제2조제2항 단서)
- 증액투자 및 배당금을 당해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하한이 없음
- 외국인 투자비율은 원칙적으로 10%이상 이어야 하나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0%미만도 가능 (영 제2조제2항제2호)
 -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

나. 외국인투자관련 법령

■ 기본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산업자원부 고시)
-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재정경제부 고시)
- 조세특례제한법령 (제5장 :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례)

■ 외국인투자촉진법의 목적 (법 제1조)

-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성격

- 외국인투자제도를 외국투자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방정부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

■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다른 개별법과의 관계

-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외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직접투자만을 대상
-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각 개별법상 순수 국내법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의 적용을 받음은 물론, 각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만 당해 사업 영위 가능

다. 외국인투자 대상업종

- 기본원칙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1호)에 의한 총 1,121개 업종 중 공공행정, 외무, 국방 등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와 관련된 63개 업종을 제외한 업종(1,058개)

※ 외국인투자 금지사유 (법 제4조제2항)

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다.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다만, 개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분을 제한하거나 국내기업과의 합작의무를 부과한 업종은 부분개방

< 외국인투자 대상업종 >

■ 외국인투자 대상업종

- 총업종수 (1,058개)
 - 전면개방업종 : 1,029개
 - 부분개방업종 : 27개 (허용기준 충족시 외국인투자 가능)
 - 미개방업종 : 2개 (2002년 3월 현재 :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및 허용기준 (부분개방업종 포함) : 29개

업종명(표준산업분류)	허 용 기 준 ¹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01110)	- 벼재배 및 보리재배를 제외하고는 허용
육우사육업(01212)	- 외국인투자비율 50%미만 허용
근해어업(05112)	- 외국인투자비율 50%미만 허용
연안어업(05113)	- 외국인투자비율 50%미만 허용
신문발행업(22121)	- 외국인투자비율 30% 미만 허용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22122)	- 외국인투자비율 50% 미만 허용
핵연료 가공업(23300)	- 원자력발전 연료의 제조·공급사업을 제외하고 허용

주 1) 당해 업종에 대한 현재의 외국인투자 허용기준을 뜻함. 따라서 허용기준이 없는 업종은 외국인투자가 불허됨.

업종명(표준산업분류)	허 용 기 준 ¹
발전업(40110)	- 원자력을 이용하는 발전업은 제외
송전업(40121)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 1. 외국인투자비율이 50%미만일 것 2. 외국투자가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는 내국인 제1주주보다 낮아야 함
배전 및 판매업(40122)	- 송전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육류도매업(51312)	- 외국인투자비율 50%미만 허용
내항여객운송업(61121) 내항화물운송업(61122)	- 허용대상: 남·북한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 - 대한민국 선박회사와 합작하고,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허용
정기항공운송업(62100)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 허용
부정기항공운송업 (62200)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 허용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업(64211)	- 기간통신사업은 외국정부·외국인 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여 외국인으로 의제되는 내국법인(외국인등)이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총지분의 100분의 49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다만,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외국인등이 대주주가 될 수 없으며, 외국인투자비율 100분의 49이하, 1인당 투자비율이 100분의 15이하인 경우에 허용) 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 나.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대주주인 법인으로서 그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100분의 15이상인 법인
유선전화 및 기타 유선통신업 (64219)	-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1. 개 요

업종명(표준산업분류)	허 용 기 준 ¹
무선전화업 (64221)	-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무선호출 및 기타 무선 통신업 (64229)	-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그외 기타 전기통신업 (64299)	-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국내은행 (65121)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에 한하여 허용
투자신탁 회사 (65931)	- 증권투자신탁업은 전면허용하고, 금전신탁업은 일반은행 또는 특수은행이 그 본래의 사업과 겸영하는 경우에 한 하여 허용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90230)	- 전기사업법 제82조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 제 외하고 허용
라디오방송업(92131)	-
텔레비전방송업(92132)	-
방송채널사용사업(87221)	- 외국인투자비율이 33%이하인 경우에 허용 (단, 종합편성 및 보도프로그램 전문편성채널 사용사업은 미 개방)
종합유선 및 기타 유선 방송업(87222)	- 종합유선방송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이 33% 이하인 경우에 허용
위성방송업 (87223)	- 외국인투자비율이 33%이하인 경우에 허용
뉴스제공업 (88100)	- 외국인투자비율 25% 미만 허용

2. 외국인투자의 보호 및 자유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투자원금, 배당금등의 대외 송금보장 및 내국민 대우 등 외국인투자의 보호대상이 됨

가. 대외송금의 보장

- 외국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배당금), 주식 등의 매각대금, 장기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와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대가등의 대외송금 보장 (법 제3조제1항)
 - ※ 대외송금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 필요 (영 제4조제1항)
- 외국환거래법상 천재지변·전시·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해 취해지는 외국환거래 정지 또는 기타 제한조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에는 적용되지 않음 (외국환거래법 제6조제4항)

나. 내국민과 동등대우

- 영업활동의 내국민대우 원칙
 - 외국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영업에 관하여 내국민 또는 내국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음 (법 제3조제2항)
 - ※ 조세감면이나 공장입지 등에 있어서는 오히려 내국민보다 우대

- 외투기업의 신고외 영업절차 간소화 (법 제22조제3항)
 -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 허용업종 추가영위시 신고제도 폐지
 - 외국인투자기업의 타사주식 취득 간소화

다. 외국인투자 자유화

-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외국인투자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을 선언(법 제4조 제1항)
 - 단, 국가안전·보건위생·환경보전에 해를 끼치는 등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음
- 외국인투자촉진법 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등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년 이를 통합하여 공고하고 이를 개정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자원부 장관과 협의 (법 제4조제4항)

3. 외국인투자 신고 및 인·허가

가. 외국인투자신고의 기본원칙

(1) 사전신고

-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다만,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기존주식 취득시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심사후 허가)
- 장기차관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 상기 외국인투자내용의 변경신고

(2) 사후신고

- 합병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신고 :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접수기관의 장에게 신고
-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또는 감소신고(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변경·말소 신청

■ 신고 접수기관

-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국내은행 본·지점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내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 및 KOTRA 국내·해외무역관

나. 유형별 외국인투자절차

(1)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투자형태)

- ① 신설법인의 설립 (단독 혹은 합작)
- ② 국내기업 (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의 증자에 참여

■ 외국인투자 신고 (법 제5조제1항)

○ 신고인 및 신고접수기관

- 신고인 : 외국투자가 혹은 대리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첨부)
- 신고접수기관 : 국내은행 본·지점, 외국은행 국내지점, KOTRA (KISC, 국내 및 해외무역관)

○ 제출서류

-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2부
-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
- 기타 서류 : 해당시에만 제출 (사본 각 1부)
 -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 등의 가격평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지점 또는 사무소,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 차관 기타 해외로부터 인정된 차입금의 상환액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출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 신고 필증
- 외국인투자 비율이 10%미만인 경우 아래의 1에 해당하는 계약서류
 - 가.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수 있는 계약
 - 나.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 다.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
- 주식, 지분 또는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처리기간 및 방법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방법 : 신고접수기관은 기재사항 누락여부, 외국인투자요건의 적합여부, 영위업종의 제외업종 및 제한업종 해당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 교부

■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자금의 도입

- 현금으로 도입하는 경우
 - 국내 외국환은행 본·지점에 송금
 - ① 해외에서 국내 외국환은행 본·지점 또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투자자금을 송금하되, 수취인은 외국인투자기업명으로 송금하여야 함(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는 가칭으로도 가능)

- ② 해외로부터 송금·예치된 투자자금은 은행에 일시예치 되었다가 법인설립 등기 전, 유가증권청약증거금 계정인 주금납입계좌로 이동되며, 은행은 이때 법인설립등기 구비서류인 “주금납입보관증”을 발급
- ③ 법인설립 전 또는 후에 은행은 송금된 외화를 원화로 매입하며, 이때 은행은 외화(매입·예치)증명서를 발급

※ 외화자금 송금 → 외화 예치(매입) → 주금납입계좌 입금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급 → 법인설립등기

- 세관을 통한 휴대 반입의 경우:

- ① 현금, 여행자수표 등 지급수단을 휴대 반입할 경우에는 관할 세관(공항세관 등)에 신고후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급받은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시 사본제출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 ② 외국환은행에 비거주자 외화계정을 개설하여 입금 (비거주자 외화계정 개설시 외국환신고필증, 여권 등이 필요)
- ③ 주금납입계좌에 입금 :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부(법인설립등기시에 필요)

○ 자본재를 현물로 도입할 경우

- ① 도입물품명세서 3부를 작성, 선적 전에 외국인투자신고기관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본·지점)에서 검토·확인 신청
- 제출서류 : 도입물품확인신청서 3부, 물품매도확약서 등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자본재 도입 완료시 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

- KISC 관세청 파견관에게 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서 2부와 수입신고필증을 제출

③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인설립등기시에 사용

- ※ 현물출자등의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을 자본재 도입 및 법인설립등기보다 먼저하여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음

■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법인설립등기는 비송사건절차법,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을 따름
 - 법인설립등기는 KISC에서 서류작성등을 지원
 - 사업자등록신청은 KISC 국세청 파견관에 신청 가능
-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법 제21조제1항, 영 제27조)
 -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 기존주식을 취득 (당해 기존주식 등의 대금을 정산)한 경우 및 전환사채·교환사채·주식예탁증서등을 주식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 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접수기관에 등록 신청
 - 출자목적물의 납입완료전이라도 외국인이 5천만원 이상 투자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
 -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 외국환 (매입, 예치) 증명서 (자본재인 경우 현물출자 완료확인서)
 -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서

(주식 및 국내 부동산을 출자하는 경우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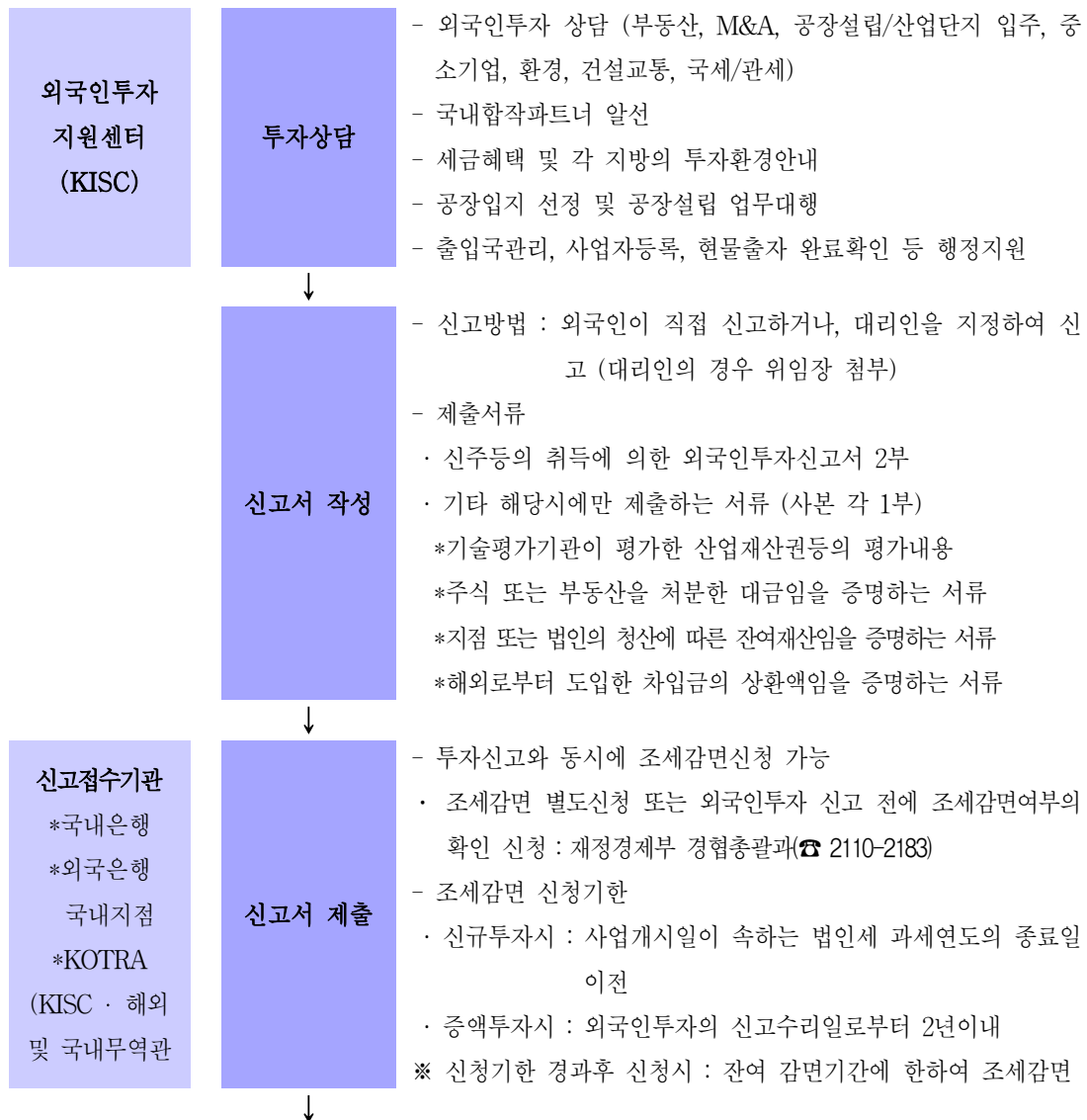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 (법 제21조제3항)

-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 2년이상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자가 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에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외국투자자가 등록 말소를 신청한 경우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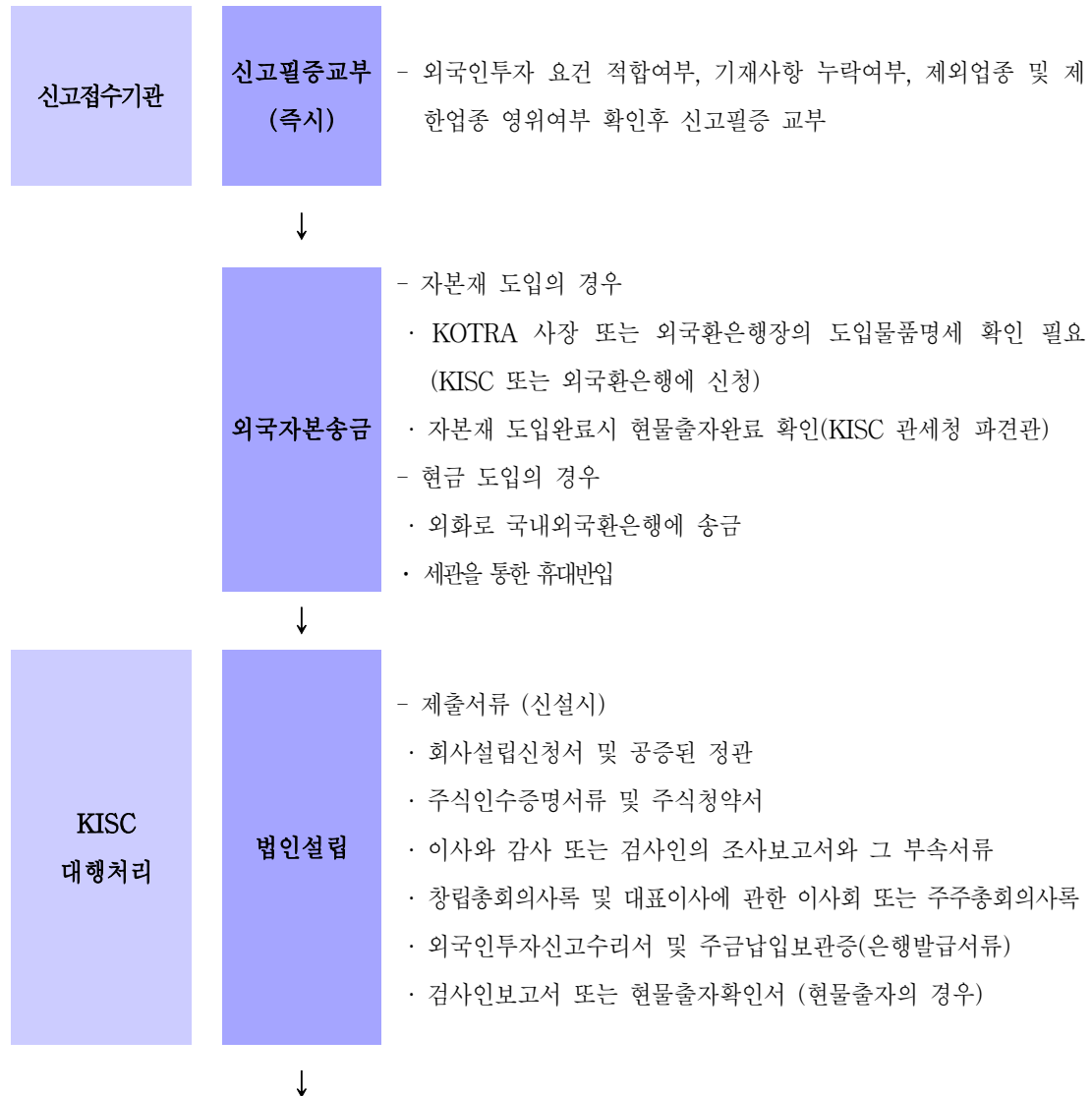
■ 공장설립 및 사업개시에 필요한 인·허가

- 외국인투자기업은 필요한 경우, 공장설립등의 사업승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허가를 받아야 함
 - 민원사무의 성격, 처리기관 및 절차에 따라 직접처리민원, 일괄처리민원, 개별처리민원사무로 분류하고 각각의 절차에 따라 처리

<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절차도 >



3.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인·허가





(2)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투자형태)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존 국내인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외국투자자가 취득

- ① 외국투자자와 국내인 주주간의 직접거래
- ②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 (10% 이상)

■ 외국인투자 신고 또는 허가신청(법 제6조제1·3항)

- 방위산업체가 아닌 기업의 기존주식취득 : 신고제
 - 신고인 및 신고접수기관
 - 신고인 : 외국투자자 혹은 대리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첨부)
 - 신고접수기관 : 국내은행 본·지점, 외국은행 국내지점, KOTRA (KISC·국내 및 해외무역관)
 - 제출서류
 -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2부
 - 기타서류 (해당시 각 1부 제출)
 - 지점 또는 사무소,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 차관 기타 해외로부터 인정된 차입금의 상환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투자 비율이 10%미만인 경우 아래의 1에 해당하는 계약서류

- 가.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 나.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 다.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
- 주식 또는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인간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양수인이 복수인 경우)
- 외국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되는 주식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출자하는 주식 및 취득하는 주식간의 교환금액·교환비율등 교환조건이 명시된 주식 양수(양도)계약서
- 신고처리기간 및 방법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방법 : 신고접수기관은 기재사항 누락여부, 영위업종의 제외업종 및 제한업종 해당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 교부
- 방위산업체의 기존주식취득 : 허가제
 - 허가신청인 및 허가신청접수기관
 - 신청인 : 외국투자가 혹은 대리인
 - 신청접수기관 : 산업자원부 투자진흥과 (☎ 2110-5362)
 - 제출서류
 -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허가신청서 2부

3.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인·허가

- 기타서류 (신고제와 같음)
- 처리기간 및 방법
 - 처리기간 : 15일 (부득이한 경우 15일 연장 가능)
 - 처리방법 : 주무부장관과 협의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 (허가를 함에 있어 조건을 부가할 수 있음)

【참고】 방위산업체 현황 (2002년 2월 현재)

기 업 명 (78개 업체)

(주)강남, 광림특장차(주), 국제종합기계(주), 금호산업(주), 기아자동차(주), 내쇼날프라스
틱(주), 대동기어(주), (주)대명, 대신금속(주), 대양전기공업(주), 대우조선공업(주), 대우
종합기계(주), 대우통신(주), 대원강업(주), (주)대한항공, 동명중공업(주), 동양라이닝공업
사, (주)동양정공, 동일자동차, (주)동진전기, (주)두레에어메탈, 두산중공업(주), 두원중공
업(주), (주)로우테크놀로지, (주)로템, 발레오만도전장시스템코리아(주), 삼공물산(주), 삼
성전자(주), 삼성탈레스(주), 삼성테크윈(주), 삼양화학공업(주), 삼우금속공업(주), (주)삼
정터빈, (주)서울엔지니어링, 세방하이테크(주), (주)수원지관, 신정개발, 아프로툴(주), 엘
지이노텍(주), 엘지전선(주), 엠텍(주), 연합정밀(주), 오리엔탈공업(주), 위아(주), 유니모
테크놀로지(주), (주)은성사, (주)이오시스템, (주)이티아이, (주)일신통신, 제일정밀공업
(주), 진양공업(주), (주)진영정기, 창원특수강(주), 천지산업(주), (주)카스코(주), (주)테
크라프, 통일중공업(주), (주)티에스텍, 평화산업(주), (주)풍산, 한국레이컴(주), 한국로스
트웍스공업(주), 한국열처리(주), 한국통신기산업(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주)한국화
이바, 한국DTS(주), 한라스페코중공업(주), 한벨헬리콥타(주), 한일단조공업(주), 한진중
공업(주), (주)한화, (주)현대제이콤, 현대중공업(주), 협진정밀공업(주), (주)휴니드테크놀
러지스, K S P, (주)STX

■ 기존주식 취득에 의한 외화자금 도입

- 국내 외국환은행 본·지점에 송금시
 -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에 송금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이를 매각하여 내국 통화로 기존 주주에게 지급하거나, 외화로 외국환은행을 통한 계정간 이체방식에 의해 지급
 - 다만, 외화를 직접 인출하여 기존 주주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국환(매입, 예치)증명서를 교부받을 것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시 필요
- 세관을 통한 휴대 반입시
 - 관할 세관 (공항세관 등)에 신고한 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여 내국 통화로 기존주주에게 지급하거나, 외화로 외국환은행을 통한 계정간 이체방식에 의해 지급
 - *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국환(매입, 예치)증명서를 교부받을 것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시 필요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및 개별처리민원사무의 허가 등의 취득

-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법 제21조제1항, 영 제27조)
 - 기존주식취득후 30일 이내에 신고접수기관에 등록 신청
 -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외국환(매입, 예치)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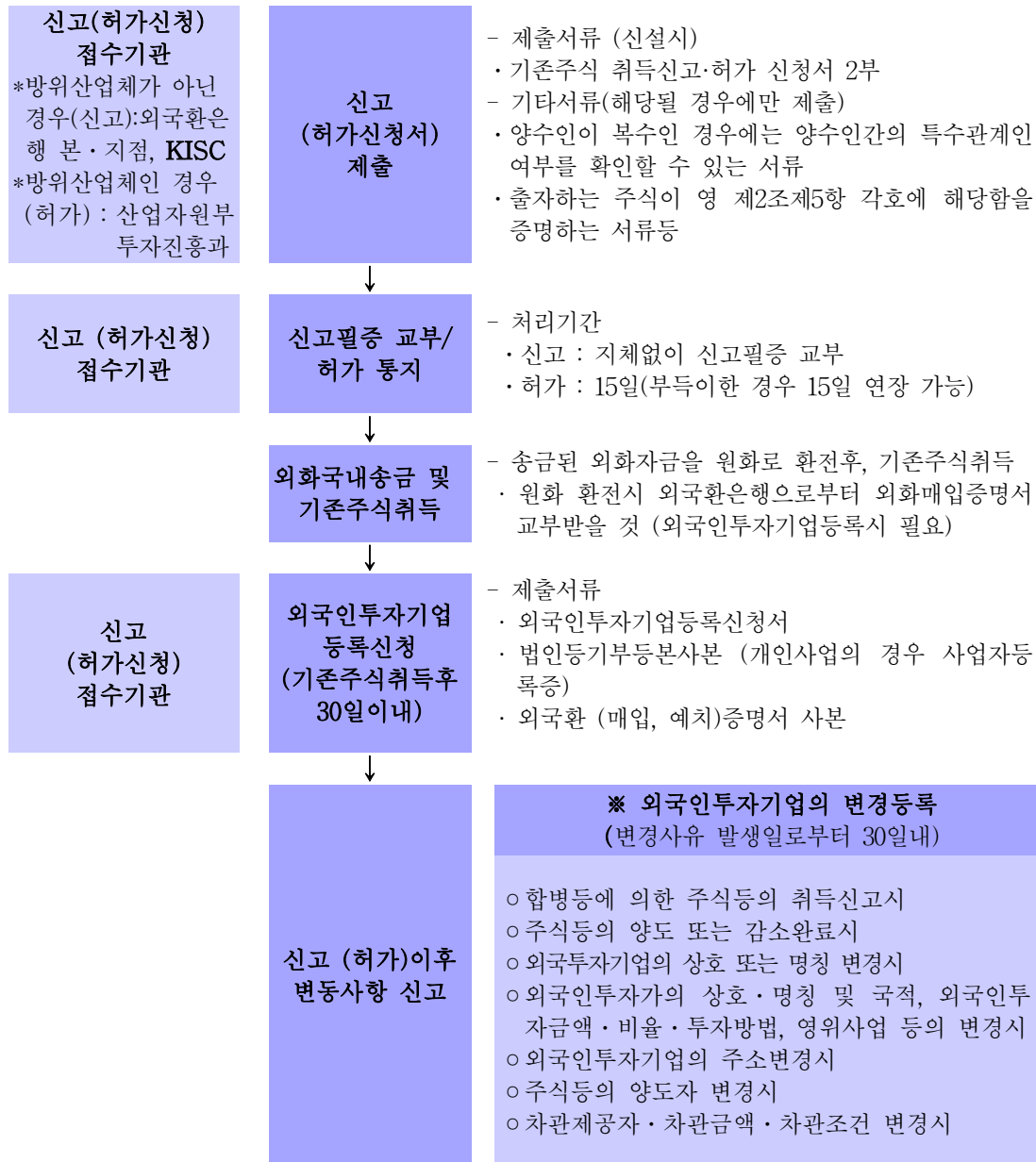
- 개별처리민원사무의 허가등의 취득
 - 기존주식 취득의 경우에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결합신고등 개별법에 의한 허가등을 취득하여야 함

■ 유의 사항

- 매입·상속·유증 또는 증여 등에 의한 주식취득 또는 양도 등의 신고 (법 제7조제1항제3호)와의 구별
 - 외국인이 등록된 외투기업의 주식을 외국투자자로부터 매입·상속·유증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취득후 30일이내에 주식취득 신고를 하여야 함 (외국투자자가 법 제23조에 의해 주식양도신고를 한 경우는 당해 외국인의 주식취득 신고의무 면제)
-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취득
 - 외국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서 9%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던 상태에서, 1.1%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고자 한다면 (총 주식취득비율이 10% 이상이 되는 경우), 1.1% 취득전에 1.1%에 대해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허가신청)를 하여야 함
- 총매출액중 제한업종 매출액의 1/100이하 기업에 투자(영 제5조제2항·3항)
 - 외국인은 당해 기업의 총매출액중 제한업종 매출액의 비율이 1/100 이하인 기업에 대하여는 투자할수 있음
 - 단, 주식등을 취득한후 당해 기업의 총매출액중 제한업종의 매출액의 1/100초과시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양도해야함

- 제한업종 영위기업에의 투자제한(영 제5조제4항)
 - 외국인은 투자가 금지되는 업종 및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기업에는 투자할 수 없음
 - 부분 허용업종을 2 이상 영위기업에의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허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수 없음

<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절차도 >



(3)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투자형태)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모기업 또는 당해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도입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 신고 (법 제8조제1항)

○ 신고인 및 신고접수기관

- 신고인 : 외국투자가 혹은 대리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첨부)
- 신고접수기관 : 국내은행 본·지점, 외국은행 국내지점, KOTRA (KISC · 국내 및 해외무역관)

○ 제출서류

-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 해외 모기업 또는 당해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차관계약서 사본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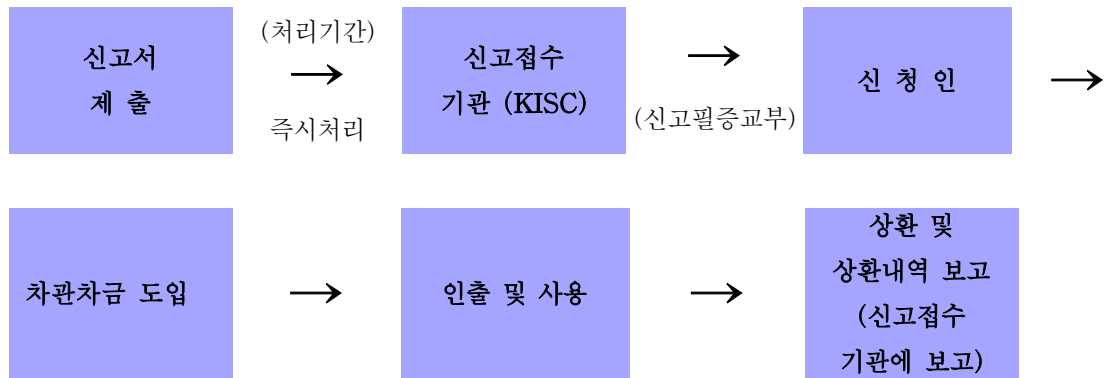
○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변경신고

- 차관계약의 변경시 : 신고서 2부 및 변경계약서사본 1부
- 차관제공자의 변경시 : 신고서 2부, 해외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및 변경계약서사본 1부.

3.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인·허가

- 신고처리기간 : 즉시 신고필증 교부

<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절차도 >



(4) 합병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형태)

- ①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재평가적립금 등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 ②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에 의하여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 ③ 외국인이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외국투자자로부터 매입·상속·유증·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 ④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의 출자로 인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 ⑤ 외국인이 전환사채·교환사채·주식예탁증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수 있는 사채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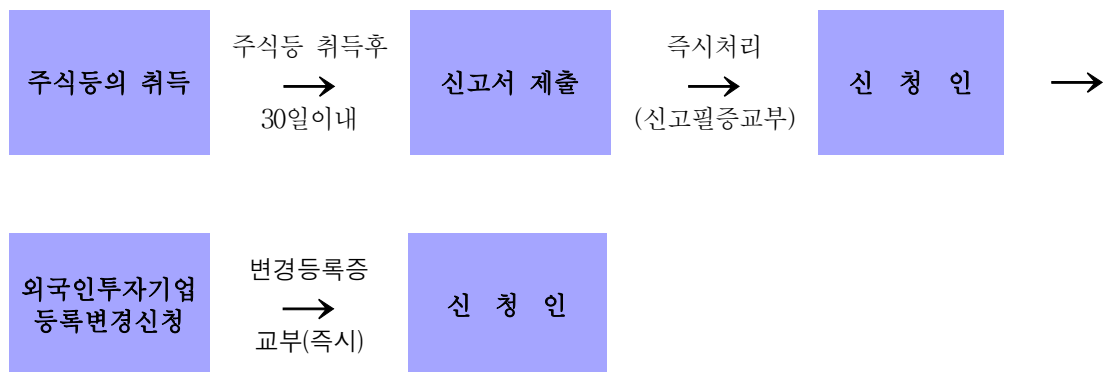
■ 외국인투자 신고 (법 제7조제1항)

- 신고인 및 신고접수기관
 - 신고인 : 외국투자가 혹은 대리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첨부)
 - 신고접수기관 : 투자가가 외국인투자신고필증 (또는 허가통지서)을 발급받은 기관
- 제출서류

3.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인·허가

-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신고서 2부
-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부
- 외국인투자 비율이 10%미만인 경우 아래의 1에 해당하는 계약서류
 - 가.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수 있는 계약
 - 나.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 다.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 연구개발 계약
- 신고기간 : 주식등의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
- 신고처리기간 : 즉시 신고필증 교부

< 합병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절차도 >



다. 공장설립 및 사업개시에 필요한 인·허가 민원사무

(1) 외국인투자관련 인·허가 민원의 처리

■ 민원의 체계적 분류

- 민원사무를 민원사무의 성격, 처리기관 및 절차에 따라 직접처리민원, 개별처리민원, 일괄처리민원사무로 분류하고, 각각의 처리절차에 따라 KISC에서 직접 또는 대행 처리

■ 민원처리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 제17조제4항)

-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처리기간내에 의견 제출
- 관계기관의 장이 부동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처리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 시·도 외국인투자진흥관 설치 (법 제16조)

- 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인·허가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자체의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도에 외국인투자진흥관을 둘 수 있도록 함
- 투자진흥관은 외국인투자관련 민원서류의 작성 및 제출등 민원사무를 대행

■ 자동승인제(법 제17조제5항)

- 외국인투자에 관련되는 모든 민원에 처리기간을 부여하고 그 처리기간내에 민

원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승인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관청의 처리지연 방지

■ 선 (조건부) 승인제 (법 제17조제10항)

- 첨부서류 등 일부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사후에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리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허가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신속히 제거

■ 거부시 절차규정 마련

- 거부사유의 명시 (법 제17조제5항)
 - 처리기간내에 허가등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거부결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외국투자자등에 통보
- 거부사유의 해소시 허가의무 (법 제17제7항)
 - 외국투자자가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허가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3일 내에 당초의 허가를 하여야 함
 - 당초의 거부사유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등을 거부하지 못함

■ 기타 민원사무 처리규정

- 외국인투자에 관한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예관법률의 규정을 적용 (영 제24조제13항)
- 외국인투자를 신고한 때로부터 사업을 개시할 때까지 관계법령등에 의한 허가등이 있어야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목적을 실현할수 있는 민원사무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일괄처리민원, 개별처리민원, 직접처리민원과 동법에서 정한

허가등을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가 및 외국투자기업의 사업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 제17조제11항)

(2) 유형별 민원사무

직접처리민원사무

■ 개념 (법 제17조제2항)

- KISC에 파견된 공무원이 소속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전결권을 부여받아 직접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
- 종류 (7개) :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사항변경, 현물출자완료확인, 사업자등록

■ 처리절차 (영 제24조제1항)

- 외국투자가 또는 그 대리인이 KISC에 직접신청,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이 직접 처리
- 해당 개별법에서 정한 서식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처리기간에 의거 처리

■ 직접처리민원사무의 종류 및 처리기간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처리기간
1. 현물출자완료확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	즉시
2. 체류자격 부여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즉시
3. 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즉시
4. 체류기간 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즉시
5. 재입국허가	출입국관리법 제30조 제1항	즉시
6.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즉시
7.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제5조	7일

일괄처리민원사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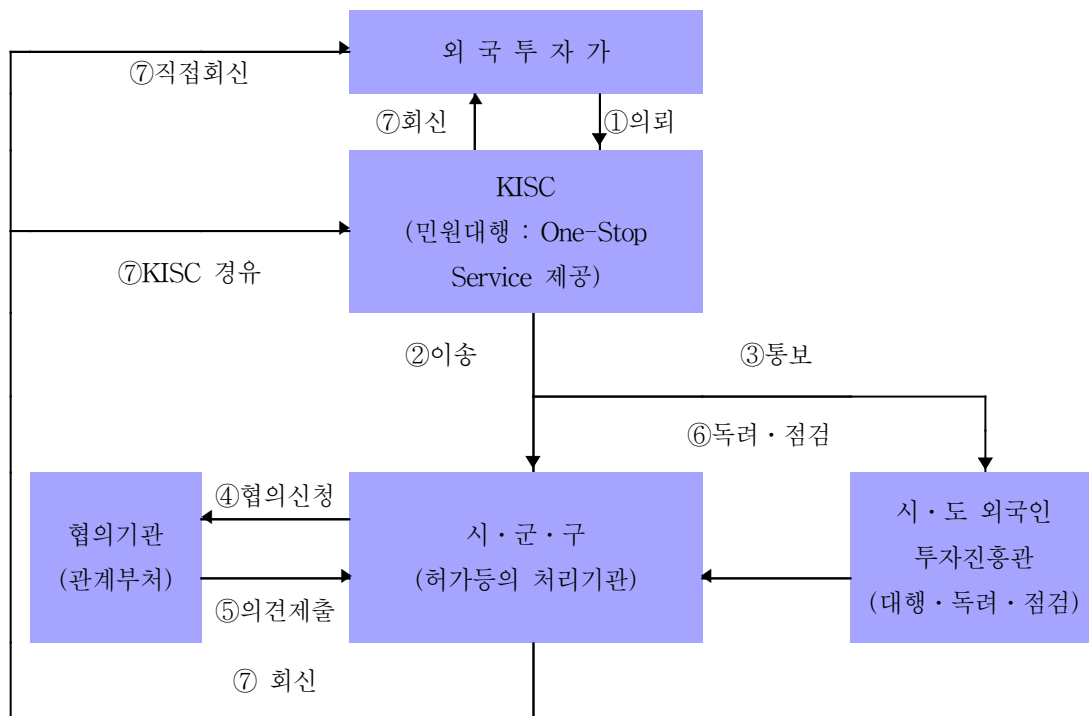
■ 개념 (법 제17조제3항)

- 민원사무의 성격 및 처리기관 등을 고려하여 5개의 민원군으로 분류하고, 각 민원에 대한 주요허가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르는 의제대상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민원사무

■ 처리절차

-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민원서식 및 기간에 따라 처리 (영 제24조제2항)
- 일괄처리민원신청서에 의제처리 받고자하는 민원의 명세서를 첨부

■ 민원사무처리 절차흐름도 (법 제17조)



※ 민원처리 및 결과회신시 유의사항

- ⑧ 처리기간연장 통보 : 당초 처리기간이내 연장 가능
- ⑨ 민원내용 보완요구 : 민원별 보완조건 및 보완시기 제시(보완처리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미산입)
- ⑩ 조건부 승인 : 민원별 미비사항 보완을 조건으로 선승인
- ⑪ 허가등의 거부 : 거부사유 해소후 재신청 (3일이내 허가)

< 설 명 >

- ① 민원인이 신청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민원의 대행을 KISC에 의뢰 (시·도 투자진흥관실에 대행 의뢰 또는 시·군·구에 직접신청 가능)
- ② KISC에서 민원신청서류의 작성 및 이송(제출) 대행
 - 일괄처리민원 및 개별처리민원에 대하여 해당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며, 이때 의제처리받고자 하는 민원의 경우에는 의제처리민원과 관련된 구비서류도 동시에 제출
- ③ KISC는 민원신청서류의 이송(제출) 사실을 해당 시·도 외국인투자진흥관에게 통보
- ④ KISC로부터 지차체에 이송된 서류는 문서계를 경유 민원별 담당과에 접수처리됨. 이 경우, 민원처리기관장(담당과)은 협의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협의요청
 - ※ 민원별 담당처리과 : 공장설립 및 사업계획승인은 공업과; 건축허가 및 건축물사용승인은 건축과; 폐수(대기) 배출시설허가는 환경과에서 접수처리
- ⑤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장은 민원처리기간 만료일 1일 또는 2일전(처리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민원의 경우에 해당됨)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동의시 사유 명시
- ⑥ 민원접수 사실을 통보 받은 외국인투자진흥관은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점검하고, 허가거부를 통보받은 경우, 그 거부사유의 적정성여부를 검토 문제해결 조정
- ⑦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허가등의 적합여부를 검토한후 허가등의 가부를 그 처리기간내에 KISC, 민원인 및 시·도 투자진흥관에 회신
 - 처리기간내에 허가등의 거부통지를 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처리기간 만료익일에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간주 (자동승인제도)

- 이 경우,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당해 허가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함

⑧ 처리기간 연장 통보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처리기간내에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당초 처리기간이내에서 처리기간 연장 가능

⑨ 민원내용 보완 또는 보정요구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함

⑩ 선 (조건부) 승인

-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허가등과 관련하여 첨부서류등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에도 이의 보완시기를 정하여 조건부 허가등을 할 수 있음
- 조건부로 허가등을 받은자가 다음단계의 허가등을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허가등의 직전단계의 민원에 붙여진 조건을 이행하였다는 확인서를 민원처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조건보완시한 (영 제24조제8항)

- (1) 공장설립 및 사업계획의 승인 :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허가를 의제처리 받은 경우 착공 신고시)까지
- (2) 건축허가 : 착공 신고시까지

(3) 환경관련 허가 : 가동개시 신고시까지

(4) 건축물 사용승인 : 건축물대장 등록시까지

⑪ 인·허가거부시 절차규정

- 민원사무의 허가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사유와 법적근거를 명시하여 외국인투자진흥관 및 민원인에게 서면통보하고, 민원인이 거부사유해소 후 재신청시 3일 이내에 허가하여야 하며, 당초의 거부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지 못함

■ 일괄처리민원사무의 종류 및 처리기간

구 분	의제대상 허가	처 리 기 간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	농지전용 허가(농지법제36조) 등 총16개 법률에 의한 26개 민원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7일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로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 14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등 기타의 경우 : 30일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도로점용의 허가등(도로법 제40조1항) 등 총 14개 법률에 의한 26개 민원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7일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거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 14일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등 기타의 경우 : 21일
3.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토지형질변경 허가(도시계획법 제4조1항) 등 총17개 법률에 의한 27개 민원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할 건축물 : 7일 (3일)
		시·도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시·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 30일 (15일)
		기타의 건축물 : 14일 (7일)

3.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인·허가

구 분	의제대상 허가	처 리 기 간
4.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허가(폐수배출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허가)	소음·진동배출시설의 허가(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등 총 6개 법률에 의한 7개 민원	7일
5.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용수도시설의 준공검사(수도법제15조 1항) 등 총11개 법률에 의한 12개민원	수질검사기관의 수질검사가 필요한 경우 : 14일
		기타의 경우 : 6일

비고 : 1) 건축허가시 ()은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처리기간을 의미함.

2) 건축허가시 외부전문가의 환경영향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서 처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그 처리기간은 14일로 함.

■ 민원서식 및 구비서류

○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사업계획서 (공장부지 예정구역과 시설배치 계획이 표시된 지적도 포함)

- 의제처리되는 허가 등의 명세서
- 토지 및 건축물 (기존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외국인투자비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농지등의 전용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에 한함)
-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 사업계획서 (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함) 1부
 -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함) 1부
 -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 (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함) 1부
 -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 외국인투자비율을 증명하는 서류 (농지등의 전용부담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함)
- 건축허가 신청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기본설계도서 1부 (건축물동별 개요를 포함함)
 -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 외국인투자비율을 증명하는 서류 (농지등의 전용부담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함)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생산공정흐름도 1부
 -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부
 - 현황도면 (건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 한함) 1부
 - 의제 처리되는 허가 등의 명세서 1부

개 별 처 리 민 원 사 무

☐ 개 념 (영 제24조제2항)

외국인투자자가 민원별로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민원사무

해당법률에서 정한 민원서식 및 처리기간에 따라 처리

☐ 처리절차

일괄처리 민원사무의 처리절차와 동일

☐ 민원사무 범위: 법 별표2, 영 별표3 및 규칙 별표1 (총116개)

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1) 외국인투자기업의 변경등록 (영 제27조제2항)

■ 변경등록 신청사유

- 합병등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등 (법 제7조)
-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등 (법 제23조제1항)
-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자의 상호 및 명칭 또는 국적이 변경된 경우 (영 제27조제2항제3호, 영 제6조)
- 외국인투자금액 · 외국인투자비율 · 투자방법,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소 등의 등록내용이 변경된 때 (영 제6조)
- 주식등의 양도자 · 차관제공자 · 차관조건 등이 변경된때 (영 제6조)

■ 변경등록 신청방법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관리기관 (외국인투자 신고접수기관 또는 허가신청기관)에 제출
-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변경등록), 사유증명서류

(2) 관세등을 면제받아 도입한 자본재의 처분 (양도, 대여, 신고된 목적외의 사용시) (법 제22조제1항)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사전신고

- 신고접수기관 : 사후관리기관 (외국인투자신고 접수기관)
- 제출서류 : 자본재처분신고서
- 수입신고수리일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 신고불필요
- 특별한 신고없이 자유로이 처분가능

(3)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사업 영위

- 외국인투자비율이 10%미만인 외국인투자기업
 - 완전개방업종, 부분제한업종, 미개방업종 등 모든 업종에 대해 추가적으로 사업 영위가 가능 (신고 불필요)
- 외국인투자비율이 10%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영 제29조제2항제1호)
 - 추가사업영위가 자유로운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 완전개방업종을 추가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 부분제한업종을 그 허용기준 범위내에서 영위하는 경우
 - 추가사업영위가 금지되는 경우
 - 부분제한업종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영위하는 경우
 - 미개방업종을 추가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기업의 다른 국내기업 주식의 취득

- 외국인투자비율이 50%미만이고, 외국투자자가 최대주주가 아닌 외국인투자기업
 - 다른 모든 국내기업의 주식을 자유롭게 취득 가능
-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거나, 외국투자자가 최대주주인 외국인투자기업 (영 제29조제2항제2호)
 -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취득이 자유로운 경우
 - 완전개방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 부분제한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그 허용기준 범위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 금융업 또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른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이 사업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 미개방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10%이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취득이 금지되는 경우
 - 부분제한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 미개방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10%이상 취득하는 경우

(5) 주식등의 양도 및 감소신고 (법 제23조제1항, 영 제30조제1항)

■ 신고 사유

- 외국인투자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자본감소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감소시키는 경우

■ 신고 시기

- 주식등의 양도의 경우 양도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자본감소의 경우 상법 제439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에 대한 최고기간의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 서류

- 주식 또는 지분 등의 양도 또는 감소 신고서
- 양도 계약서, 자본감소 변경 등기서 등 양도 또는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
-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납부(할)세액확인서 (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또는 감소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신청
○ 제출서류 - 주식등의 양도 또는 감소신고서 2부 - 양도 계약서, 자본감소 변경 등기서 등 양도 또는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납부(할) 세액확인서 사본 1부 (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수탁기관 :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의 경우와 동일 ○ 처리기간 : 즉시처리 (신고필증 교부) ○ 신고기한 : 주식등의 양도 또는 감소후 30일 이내	○ 제출서류 - 등록변경신청서 1부 -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수탁기관 : 외국인투자의 신고접수기관 ○ 처리기간 : 1일 (등록증 교부) ○ 신고기한 : 변경등록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4.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가. 조세지원

(1) 조세지원제도의 의의

-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 (법 제9조)

(2) 조세감면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영 제116조의2)
 -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고도기술수반사업(467개 업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111개 업종)에 해당되어야 함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모두 아래 요건을 전부 충족시켜야 함.
 -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 (당해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수리일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수리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나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 또는 당해 서비스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사업 (법 제18조, 영 제25조)

-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
-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대상 기준
 - 제조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외국인투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0만불 이상인 경우
 -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신규상시 고용규모가 1,000명 이상인 경우
 -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000만불 이상이고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
 -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및 국제회의시설업
 - 2003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한 외국인투자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000만불 이상일 것 (2005년 12월 31일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이 완료되는 것까지 인정)
 -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종합 휴양업 및 종합 유원시설업

- 2003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한 외국인투자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000만불 이상 (2005년 12월 31일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 이 완료되는 것까지 인정)
-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복합화물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단지 운영사업, 항만 시설운영사업 및 항만 배후단지내의 화물운송업, 창고업등 물류산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000만불 이상인 경우

■ 자유무역지역등에 입주하는 사업

○ 대상사업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영위하는 제조업 및 물류업
- 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 물류업

○ 투자요건 및 규모

-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함
- 제조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000만불 이상이고, 신규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
- 물류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000만불 이상

※ 종전의 마산 및 익산 자유무역지역 입주사업

-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자유무역지역 설치법 부칙 제2조), 조세감면 및 임대료적용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지역과 동일하게 적용 (법 부칙 제6조)

- 따라서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과 동일한 조세 감면혜택을 받음

■ 기존주식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적용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9항)
 - * 국공유재산 임대, 행정지원서비스 제공 등 기타지원제도는 적용
-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등록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출자한 경우 조세감면 배제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출자한 경우 조세감면 배제
- 대한민국법인(또는 국민)이 외국법인(또는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의 1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하는 경우 그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조세 감면 배제
- 장기차관 : 장기차관은 감면비율 계산시 적용하는 외국인투자 비율에 포함되지 아니함

(3) 조세감면 세부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영 제116조의2)

■ 법인세 · 소득세

- 조세감면대상으로 결정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 수반사업과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사업 등에 동일한 감면 혜택

○ 감면세액범위

-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총산출세액×감면대상 사업소득/총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 감면기간 및 비율

-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해로부터 7년간은 100%, 이후 3년간은 50% 감면
- 단, 사업개시후 5년이 될때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5년이 되는 해부터 7년간은 100%, 이후 3년간은 50% 감면

■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 감면세액범위

- 산출 배당소득세에서 전체사업소득 중 감면대상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 감면기간 및 비율

-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소득세와 동일함

■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 감면세액범위

- 산출세액에서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 감면기간 및 비율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은 100%, 이후 3년간은 50%

- 단, 사업개시일전이라도 조세감면결정 이후 취득재산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는 전액면제, 재산세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은 100%, 이후 3년간은 50%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비율을 높인 경우 이에 따름

■ **종합토지세**

- 공제대상금액
 -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표에서 공제함
- 공제기간 및 비율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은 100%, 이후 3년간은 50%
 - 단, 사업개시일전 취득재산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간은 100%, 이후 3년간은 50%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 이에 따름

■ **증자의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영 제116조의6)**

-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 (관세포함)은 최초투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련조세감면규정을 준용함
-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기타 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증자의 경우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기존주식의 감면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잔여기간과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함

- 단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를 한 후 5년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순증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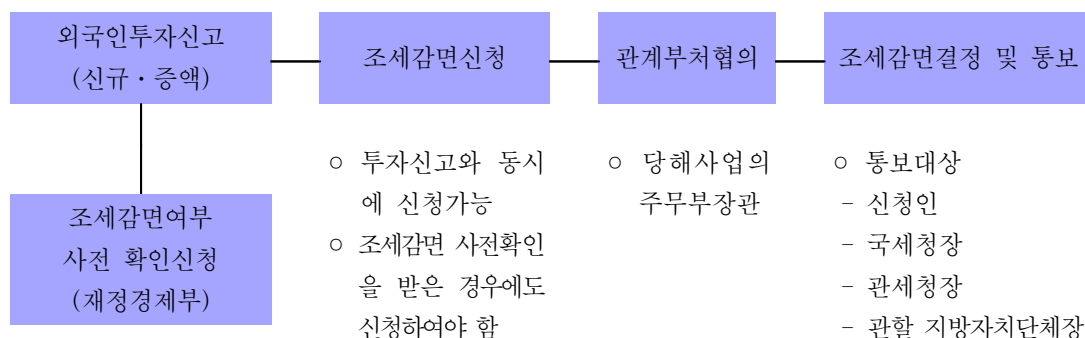
■ 사업양수 방식의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2003.1.1부터 적용)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사업양수방식의 외국인투자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이 단축 및 축소됨
 - 법인세 및 소득세 :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로부터 3년간은 50%, 이후 2년간은 30% 감면
 -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소득세와 동일함
 -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는 50%, 이후 2년간은 30% 감면. 단, 조세감면 결정을 받고 사업개시전에 취득한 재산의 경우 취득세·등록세는 50%, 재산세·종합토지세는 취득일로부터 3년간 50%, 이후 2년간은 30% 감면

(4) 조세감면신청 및 결정절차

<조 세 감 면 절 차 도>

(20일 이내)



■ 조세감면신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

○ 신청기한

- 신규투자 :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 증액투자 : 증액투자의 신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 신청기한 경과후 신청시 : 잔여 감면 기간에 한하여 조세 감면

○ 조세감면 사전확인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8항)

- 외국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이 조세감면 대상인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줌으로써 투자결정을 용이하게 하도록 함
-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전확인을 받은 때에도 외국인투자 신고
후에 별도의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야 함

○ 감면내용 변경신청 :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 신청기관 : 재정경제부 경험총괄과 (☎ 2110-2183)

- 외국환은행 및 KISC에 외국인투자신고서와 조세감면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
는 것도 가능
- 이 경우, 외국인투자 신고를 처리하는 기관은 외국인투자신고에 대해서는 소정
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조세감면 신청분에 대해서는 접수 즉시 관련서류
일체를 재정경제부로 이송

■ 신청시의 구비서류

- 조세감면신청서 2부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

- 당해 기술에 대한 설명서
 - 당해 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서비스의 활용범위를 기재한 서류
 - 생산방식 및 공정표 (제조기술에 한함)
 - 전공정에 걸쳐 작성하되, 고도기술을 요하는 공정을 구분표시할 것
 - 공정별 생산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표시할 것
 - 경제적효과 또는 기술적성능을 증빙하는 자료
 - 동종 또는 유사제품과 비교한 성능, 품질·비용절감에 관한 사항
 - 고도기술임을 증빙하는 기타자료
 - 공업소유권, 인증서·시험합격서, 기술개발 관련자료, 제3국 공여실적,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관련 자료, 기타 고도기술성을 증빙하는 서류
- * 조세감면여부 사전확인의 경우에도 상기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함

■ **감면여부의 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8항)**

- 처리기간 : 조세감면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결정
- 관계부처 협의
 - 당해 사업의 주무부 장관 : 고도기술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협의

■ **조세감면 결정 및 통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8항)**

-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토대로 조세감면여부를 결정

※ 단,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경우에는 협의 생략

- 재정경제부장관이 조세감면결정을 한때에는 신청인, KISC, 수탁기관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결정내용을 통보

■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영 제116조의6제1항)

- 유상감자후 5년이내에 다시 증자하는 경우에는 감자전보다 순증가 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세감면결정

■ 사업개시의 신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4)

- 사업개시일 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해야 함.
- 관할세무서장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5)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 면제대상

-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기술제공자가 받는 기술도입대가 (royalty)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면제

※ 조세면제대상 고도기술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고시 (조세면제대상 고도기술 : 고도기술수반사업 467개, 산업지원서비스업 111개 : 총계 578개)

- 면제기간 : 당해 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간
 - 신청기한 : 당해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1년 또는 기술도입대가의 최초 지급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내 (신청기한 경과후 신청시 : 잔여 감면 기간에 한하여 조세 면제)
 - 신청기관 : 당해 기술의 주무부 장관
 - 처리기간 : 조세면제신청일부터 7일 이내
 - 신청시 구비서류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서 2부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
 - 기술도입계약서 사본
 - 기술개발관련자금 및 기타 고도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 기타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이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
- ※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신청시 구비서류와 같음

【참고】 현행 기술도입계약신고제도 (법 제25조)

- 신고대상 : 기술도입대가의 지급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다음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
 - 조세면제대상 고도기술로서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및 우주 비행체 (지상지원설비 포함)와 그 부분품에 관한 기술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제7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에 관한 기술

- 신고기관 : 주무부 장관
- 처리기간 : 즉시(다만, 신고와 동시에 조세면제를 신청하는 경우는 7일)
- 발효기한 : 당해 기술도입계약 신고일로부터 6월이내, 다만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장가능

나. 국·공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감면

(1) 국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법 제13조, 영 제19조)

■ 임대기간 및 임대요율

- 임대기간을 종전 20년에서 50년 범위내로 확대
 - 50년 범위내에서 임대기간 갱신 가능
- 임대료는 토지등의 가액의 1%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임대료의 감면

- 감면대상 :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기업전용단지 및 국가산업단지내 국가소유 토지
- 감면기준 및 감면비율
 - 100%까지 감면 : 외국인투자지역입주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입주 미화 100만불 이상인 조세감면결정 고도기술사업
 - 75%까지 감면 :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입주 미화 500만불이상의 제조업, SOC 확충·산업구조의 조정·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기

여하는 사업(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결정)

- 50%까지 감면 : 국가산업단지 입주 미화 100만불이상 조세감면결정 고도기술수반사업, 미화 500만불이상 일반제조업, SOC 확충 등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임대하는 경우

※ 외국인 전용단지

○ 현 황

(단위 : m², 원)

단 지 명	분양 및 임대현황(2002. 1 현재)			분양 및 임대가
	구분	대상면적	잔여면적	
천안외국인단지 (충남 천안시 백석동)	분양	61,058	-	155,000
	임대	430,024	-	121/월
평동외국인단지 (광주시 광산구 장록동)	분양	19,835	-	86,575
	임대	938,143	290,906	40/월
대불외국인단지 (전남 영암군 삼호면)	분양	431,096	-	69,400
	임대	1,183,345	732,064	27/월

○ 입주자격

- 천안외국인단지 : 외투비율 30%이상
- 평동·대불단지 : 외투비율 10%이상

○ 입주업종

- 천안외국인단지 : 고도기술수반업종, 신기술수반업종(일반제조업은 입주불가)
- 평동·대불단지 : 상기외 일반제조업

(2) 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법 제13조, 영 제19조)

■ 임대기간

- 국유 재산과 같이 50년

■ 임대료 감면대상 및 비율

-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감면율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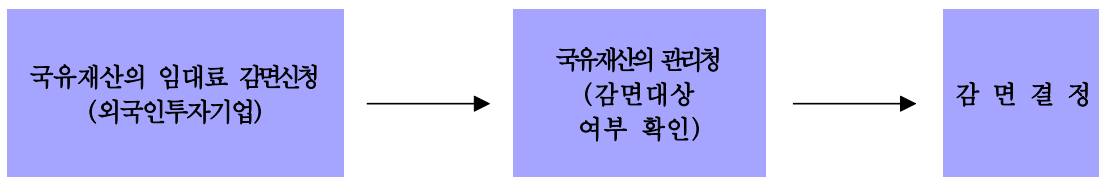
(3) 국·공유재산의 매각·임대 및 임대료감면 신청절차 (법 제13조, 영 제19조)

■ 매각 및 임대절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 공장 기타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사용, 수익 또는 임대, 매각 가능(조세감면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가능)
- 임대기간은 50년까지 가능하며 임대기간 종료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혹은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임대토지 위에 공장 등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 토지 등의 매각에 있어서 매입대금의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음 (적용이자율 4%이내)
 - 국유재산 : 1년의 범위내에서 납부기일 연기 또는 20년의 범위내에서 분할납부
 - 공유재산 :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

■ 임대료감면 신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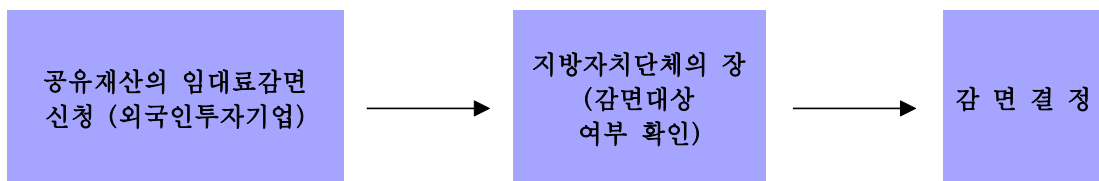
○ 국유재산의 임대감면신청



※ 감면신청시 구비서류

- ①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② 토지 등에 대한 임대업계약서 사본 1부

○ 공유재산의 임대료감면 신청



다. 관세지원

(1) 관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 면제대상 세목 :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 면제대상

-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본재로서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투자신고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 한함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 외국투자자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 *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 * 자본재란 산업시설 (선박, 차량, 항공기 등을 포함)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림, 수산업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 어패류 기타 주무부장관이 당해 시설의 최초시운전 (시험사업을 포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 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 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연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함

■ 적용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5)

- 외국인투자신고를 한날로부터 3년 이내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 다만, 공장설립승인의 지연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추가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함

■ 신청기관 : 수입신고 세관장

■ 신청시 구비서류 : 관세 등 면제신청서 1부 및 다음의 첨부서류

- 법인세등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조세감면결정 공문)

- 출자목적물로 도입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2) 수입통관상 특례

■ 자본재도입물품명세

확인대상 외국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 지급수단으로 도입하거나, 또는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로서 관세등이 면제되는 경우

■ 자본재도입물품명세확인 (법 제29조, 영 제38조제2항)

- 도입자본재의 확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자본재의 수량, 규격, 가격 및 제작자 등을 명시한 도입물품명세서를 작성하여 선적 전에 외국환은행장 또는 KOTRA 사장 (KISC에 신청)에게 자본재도입물품명세확인을 신청하여야 함
 - 신청시 물품매도확약서등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통관절차

- 도입된 자본재를 통관하고자 할 때에는 통관하고자 하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신고수리를 받아야 물품을 반출할 수 있음
- 관세 등이 면제되는 자본재의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음
 - 관세등 면제 신청서
 - 조세감면대상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거나 또는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임을 입증하는 서류
- 자본재도입물품명세확인서
- 기타 통관시 기본적으로 제출하여야 할 서류(예 : 송품장, B/L, 가격신고서, 통합공고상의 구비서류 등)
 - * 관세 등이 면제되는 자본재라도 반드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 등 면제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면제받을 수 있음
 - * 출자의 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로서 관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자본재 도입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음

(3) 자본재 출자에 관한 특례

■ 현물출자완료확인 (법 제30조제3항)

- 출자의 목적물로 도입되는 자본재(현물출자)에 대하여는 동 자본재 통관 후, KISC(관세청 파견관)에 현물출자완료확인을 받으면 됨
- 외국투자가가 자본재를 출자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9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봄
- 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은 자본재가 여러번 분할하여 통관되는 경우에는 동 자본재가 최종적으로 통관된 후에 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수입신고필

증 사본이며, 즉시 처리됨

■ **현물출자완료 확인 통보 (영 제39조)**

- 관세청장은 현물출자완료확인후, 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 **자본등재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법 제21조, 영 제27조)**

-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의 목적물로서의 자본재도입이 완료되면 현물출자완료 확인서를 받아 관할법원에 자본등재 또는 법인등기를 하고, 외국환은행장 또는 KOTRA 사장 (KISC에 신청)에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시 제출하여야 함

(4) 자본재 사후관리

■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법 제22조, 영 제29조)**

- 관세등을 면제받아 도입한 자본재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신고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외국환은행장 또는 KOTRA 사장에게 신고하여 지체없이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 함
 - 다만, 관세면제를 받고 도입한 자본재로서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를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함
- 자본재의 처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 제33조)

■ **관세가 추징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5, 영 제116조의8)**

-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또는 폐업된 경우에는 말소일 또는 폐

업일전 3년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함.

- 출자목적물이 신고된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에는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신고된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을 추징함
- 외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 등을 관세등의 면제일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을 추징
- 추징관세액 계산시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물품의 가치가 감소된 것에 대하여는 가치감소에 따른 가격 저하분에 상응하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음

■ 관세추징이 면제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5항, 영 제116조의10)

-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중인 자본재를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 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기 타

■ 주식배당에 관한 특례 (법 제30조)

-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업상의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주식배당 할 수 있음

■ 산업재산권 감정에 관한 특례 (법 제30조)

- 외국인투자의 출자목적물로 투자되는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제29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봄

5. 외국인투자지역

가.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관리 (법 제18조)

(1) 지정기준

업종기준	지정기준
제조업 또는 고도기술수반 사업·산업지 원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신규 개발시>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0만불이상 ○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인 기업으로서 신규 상시고용규모가 1,000명 이상인 경우 <기개발된 산업단지내 지정시> ○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000만불 이상이고 신규상시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 * 투자금액은 5년 이내 납입을 완료하여야 함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및 국제회의시설업 - 2003. 12. 31까지 신고한 외국인투자로서 미화 2,000만불이상의 외국인투자 (다만, 2005. 12. 31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이 완료되는 것까지 인정) ○ 종합휴양업 및 종합유원시설업 - 2003. 12. 31까지 신고한 외국인투자로서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휴양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 투자하는 미화 3,000만불이상의 외국인투자 (다만, 2005. 12. 31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이 완료되는 것까지 인정)
물류업	○ 복합화물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단지운영 및 항만시설운영사업 ○ 항만 배후단지내 화물운송사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시설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중개 및 대리업등 물류산업 - 미화 3,000만불 이상

※ 외국인투자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16조의 2 제7항 및 제8항의 계산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소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를 외국인투자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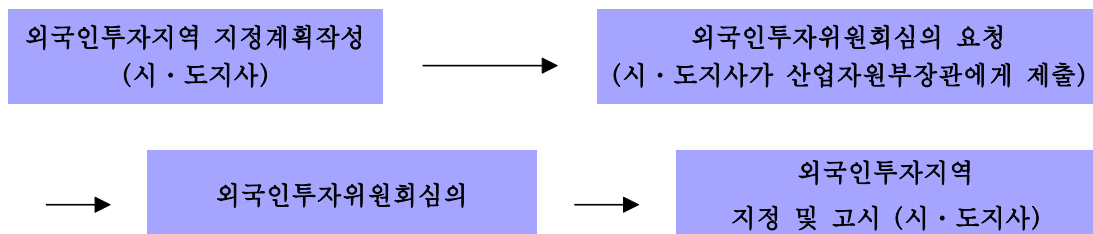
(2) 지정권자

외국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지사가 지정

※ 2이상의 외국투자가가 투자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업종 및 지역

- 영위하는 업종이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중 동일 계열의 산업군에 속하거나 부품 또는 제품의 생산에 있어서 상호분업적 협력관계에 있는 경우
-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이 동일한 국가 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 안에거나 인접한 경우

(3) 지정절차



(4) 개발·관리

- 원칙 : 시·도지사가 개발·관리
- 예외 : 기개발된 국가 산업단지내에 외국인투자지역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관리

(5) 지정해제

-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 지역이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갱출 것을 명하여야 함
- 이행기간내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위원회에 지정해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함
- ※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나.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법 제19조)

(1)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

-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적용
 - 국세(법인세·소득세) : 7년간 100%, 그후 3년간 50%감면
 -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 8-15년간 감면

(2) 임대료·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및 지원 혜택

- 외국인투자지역내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100% 면제
- 외국인투자지역 안의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의료·교육·주택시설 등 생활환경시설 지원내용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결정

(3) 외국인투자지역 개발에 대한 지원

- 외국인투자지역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산업단지에 준하여 건설비용 및 기반시설을 지원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지원이 결정된 도로 및 용수시설, 폐수종말처리 시설, 전기시설 등 인프라시설 지원
 - *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감면
 - 양도소득세 감면 및 취득세·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제276조)
 - 산림전용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개발부담금, 대체조림비,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점용료 등 7개 부담금 면제 (산림법등)

(4)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타법률 적용 배제

- 외국인투자지역내에서의 토지분할시 시·군·구청장 허가 등을 생략
- 외국인투자지역내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참여제한, 지정계열화품목 생산의 중소기업체 위탁 의무 및 국가유공자 고용의무 적용 배제
 - * 국가유공자 고용의무 면제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용

(5)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6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은 이 법에 의한 조세감면 및 임대료 감면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간주

< 별첨 >

외국인직접투자관련 서식

-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제1호서식]
-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 변경신고서 [제2호서식]
-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허가신청서 [제3호서식]
-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 변경 신고서/허가신청서 [제4호서식]
-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신고서 [제5호서식]
-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서/ 변경신고서 [제6호서식]
- 조세감면신청서/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서 [제80호서식]
- 조세감면 대상여부 사전확인신청서 [제81호서식]
- 사업개시일 신고서 [제82호서식]
-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 신청서 [제83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서식]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외국인투자 처 리 기 간 즉 시	
외 국 투자가	①상호 또는 명칭(영문)				③국적	
	②주소(영문)					
내 국 투자가	④상호 또는 명칭	(전화:)				
외국인투자 기 업	⑤상호 또는 명칭	국문:	⑥자본금	취득전		
		영문:		취득후		
	⑦사업자등록번호(본사)					
	⑧주소	본사	(전화:)			
		공장(또는 사업장)	(전화:)			
	⑨하고자 하는 사업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신고접수기관 기재란)				
⑩금번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취득가액: 원 (USD 상당), %			
⑪투자형태	☐ 법인설립 (☐ 단독, ☐ 합작) ☐ 유상증자 (☐ 내국법인, ☐ 외투기업) ☐ 기타			⑫투자목적	☐ 공장 또는 ☐ 사업장 설립 ☐ 인수합병 ☐ 기타	
⑬투자방법	현 금	원 (USD 상당)	산업재산권등	원(USD 상당)		
	자본채	원 (USD 상당)				
	주 식	원 (USD 상당)				
	부동산	원 (USD 상당)				
⑭취득할주식 (지분)의 내용	종류		1주당액면가		1주당 취득가액	
	수량		액면총액		취득총액	
⑮금번 취득후 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			취득가액: 원 (USD 상당),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수탁기관장 귀하						
신고인 귀하 신고 번호 : 위와 같이 신고를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장 :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뒤쪽)

		수 수 료
		없 음
<u>구 비 서 류</u> 1. 영 제39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 평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법 제2조제1항제7호라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 등에 따른 잔여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법 제2조제1항제7호마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차관 기타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법 제2조제1항제7호바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영 제2조제5항 각호의 주식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2조제1항제7호사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출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신고필증 사본 1부(법 제2조제1항제7호아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6. 영 제2조제2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계약서 사본 1부(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7. 주식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영 제2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수탁기관장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확인 ↓ 신고필증 교부 ← 수 령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외국인투자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 변경신고서				처 리 기 간		
				즉 시		
이 미 신 고 된 외 국 인 투 자 내 용	① 신 고 일	년 월 일				
	② 외국인투자자의 상호 또는 명칭			③ 국적		
	④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원(USD 상당), %				
	⑤ 투자방법					
	⑥ 하고자 하는 사업					
	⑦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소					
	변경 내용	⑧ 이미 신고된 내용			⑨ 변경후 내용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수탁기관장 귀하						
신고인 귀하 신고 번호 : 위와 같이 신고를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장 : 인						
구 비 서 류				수수료		
				없 음		
영 제2조제2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계약서 사본 1부(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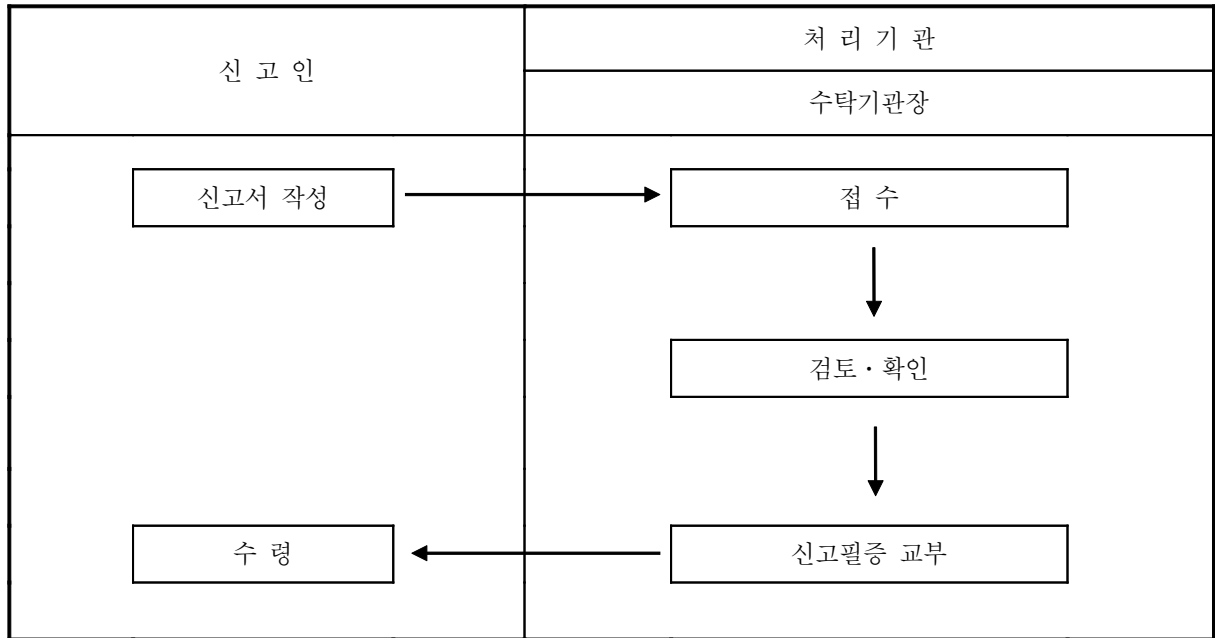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					☐ 신 고 서 ☐ 허가신청서		처 리 기 간 신고: 즉시, 허가: 15일		
주 식 등 발 행 기 업	①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주 소								
	④공장(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하고 있는 사업				⑥자본금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신고(신청)접수기관 기재란]					
⑦주식(지분)취득자		상호 또는 명칭(영문)		(전화:)			⑧국적		
⑨주식(지분)양도자		상호 또는 명칭		(전화:)					
⑩금번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취득금액: 원(USD 상당), %					
⑪ 취득 할 주 식 (지분)의 내용		종 류		1주당액면가		1주당취득가			
		수 량		액면총액		취득총액			
⑫금번 취득후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취득금액: 원(USD 상당),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신 청) 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 :) 수탁기관장(또는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신고(신청인) 귀하 신고(허가) 번호 : 위의 신고(신청)를 필하였음을 확인(허가)합니다. 허가조건: 년 월 일 산업자원부장관(또는 수탁기관장): 인									
구 비 서 류							수 수 료		
							없 음		
1.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서류 사본 1부 2. 양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양수인간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출자하는 주식의 영 제2조제5항 각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출자하는 주식 및 취득하는 주식간의 교환금액·교환비율 등 교환조건이 명시된 주식양수(양도)계약서 사본 각 1부(법 제2조제1항제7호사목에 해당하는 주식을 출자하고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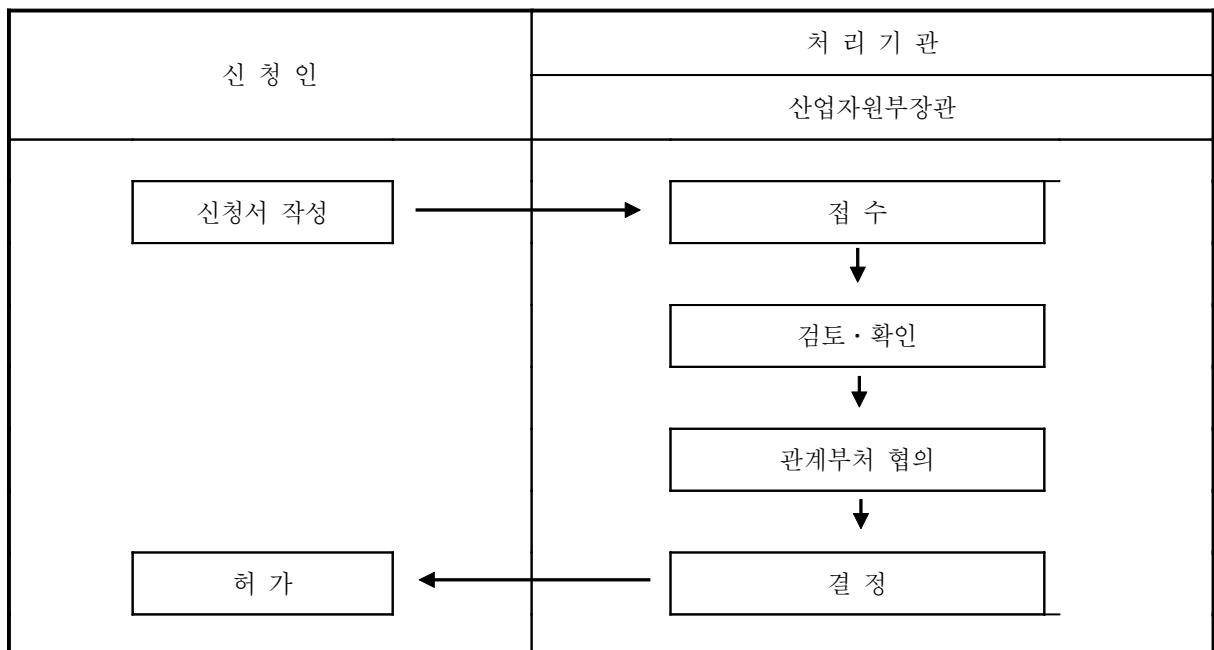
(뒤 쪽)

이 신고서 및 허가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의 경우]



[허가신청의 경우]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외국인투자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내용 변경		☐ 신고서 ☐ 허가신청서	처 리 기 간 신고: 즉시, 허가:15일
①주식취득신고(허가)일	년 월 일		
②외국투자자의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③주식등 발행기업			
변경내용	④이미 신고(허가)된 내용	⑤변경후 내용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수탁기관장(또는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신고(신청)인 귀하 신고(허가) 번호 : 위의 신고(신청)를 필하였음을 확인(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장(또는 산업자원부장관): (인)			
구 비 서 류		수 수 료	
		없 음	
1. 영 제2조제2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계약서 사본 1부(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양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양수인간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양수인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앞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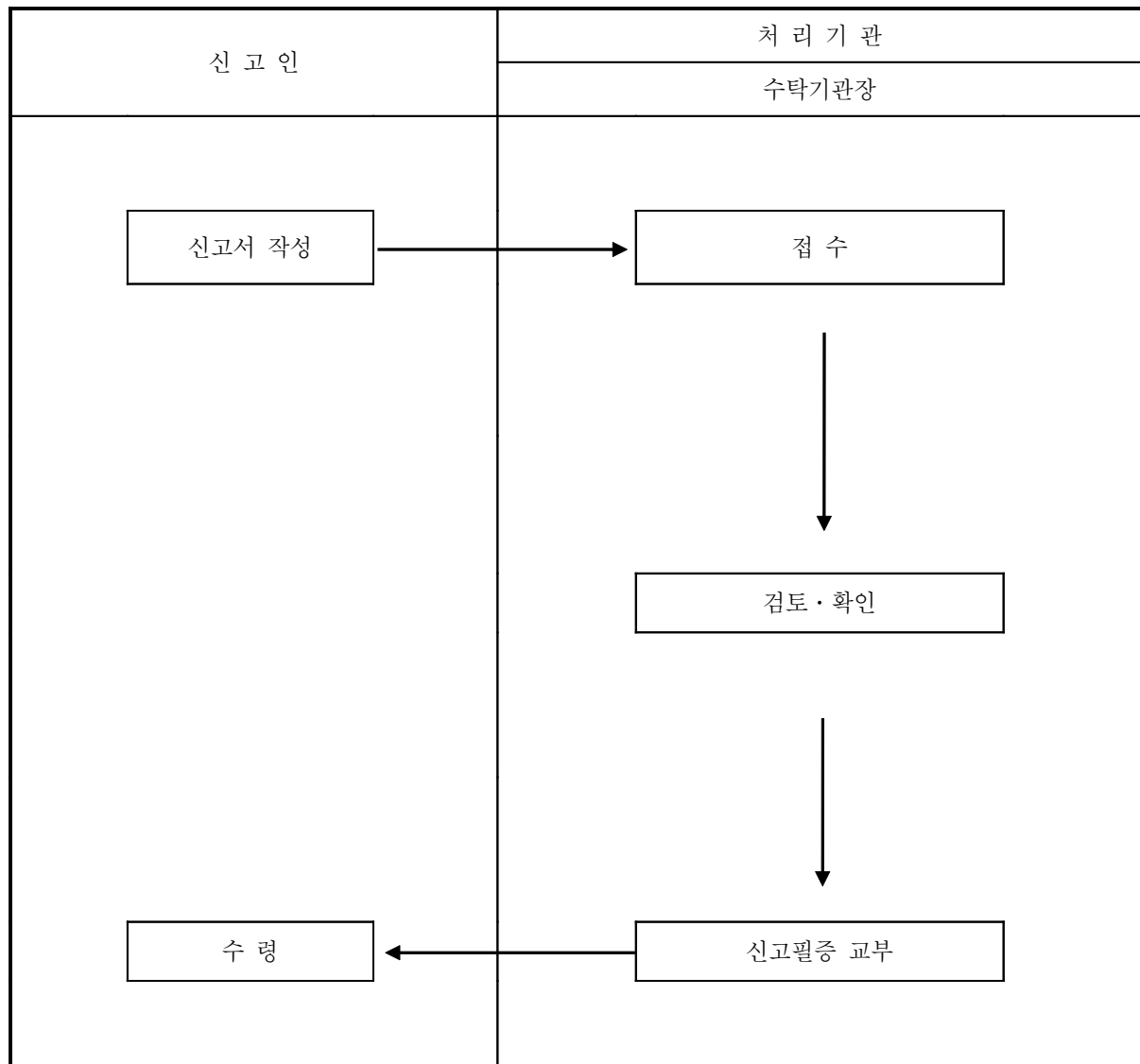
[별지 제5호서식]

						외국인투자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신고서						처 리 기 간
						즉 시
외국인 투자기업	①성명 또는 명칭		국문:		②사업자등록 번호(본사)	
			영문:			
	③주소	본사	(전화:)		④자본금	취득전
		공장(사업장)	(전화:)			취득후
	⑤하고있는 사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신고접수기관 기재란)				
외국투자자	⑥상호 또는 명칭					⑦국적
	⑧주 소	(Tel:)				
취득할 주식 (지분)의 내역	⑨종 류	⑩수 량	⑪1주당 액면가	⑫액면총액	⑬취득가액	⑭취득총액
⑮취득사유						
⑯취득후 외국인투자자가 소유주식(지분)의 수량, 금액 및 비율			주(좌) 취득금액: 원(USD 상당),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수탁기관장 귀하						
신고인 귀하 신고번호 : 위와 같이 신고를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장 (인)						
구 비 서 류						수 수 료
						없 음
1.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영 제2조제2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계약서 사본 1부(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외국인투자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 리 기 간	
						즉 시	
차관	①상호 또는 명칭						
도입자	②주 소		(전화번호:)				
차관	③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④국적	
제공자	⑤주소(영문)						
차관의	⑥차관금액		(USD 상당)				
내용	차관조건	⑦거치기간			⑧상환기간		
		⑨연이자율			⑩기 타		
⑪차관방법	현 금		자 본 재			기 타	
⑫차관용도							
※⑬변경내용		이미 신고된 내용			변경후 내용		
외국인투자촉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수탁기관장 귀하							
신고인 귀하 신고 번호 : 위와 같이 신고를 필요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장: 인							
구 비 서 류 (신고의 경우) 1. 해외 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 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차관 계약서 사본 1부 (변경 신고의 경우) 1. 해외 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 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관제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변경 계약서 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80호 서식]

[별지 제80호 서식]					외국인투자	
☐ 조세감면신청서 ☐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처 리 기 간	
					20 일	
외국투자가	①상호 또는 명칭 (영 문)				②국적	
③외국인투자기업명 (영 문)				④사 업 자 등록번호		
외 국 인 투 자 내 용	⑤신고된 사업			⑥신 고 일		
	⑦주식등의 취득총액 원 (USD 상당)			⑧주식등의 액면총액 원		
	⑨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이 10%이상인지 여부					□ 예 □ 아니오
⑩투자 방법	현 금	원		자본재	원	
	부동산	원		지적재산권등	원	
⑪입지						
⑫구분	□ 신규 □ 증자			⑬사업개시일		
조세감면 신청내용	⑭감 면 대 상 사업의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호에 해당			
	⑮감면사유					
⑯변경신청 내 용	이미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의 내용			변경신청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비고 : ⑦란 및 ⑧란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사목 및 동법 제6조에 의 한 투자금액을 제외합니다. ⑮ 감면사유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되,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명을 기입합니다. ⑯ 변경신청내용란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기입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 81호 서식]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대상 해당 여부 사전확인 신청서				처 리 기 간	
				20일	
신 청 인	①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②국적
	③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④하고자 하는 사업명				
	⑤업 지				
	⑥관련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호에 해당		
	⑦감면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82호서식]

				외국인투자	
사 업 개 시 일 신 고 서				처 리 기 간	
				7 일	
외 국 인 투 자 기 업	①상호 또는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 (대표자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⑥주 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 류	⑦업 태		⑧외국인 투자신고일		
	⑨종 목		⑩사업자 등록일		
⑪사업개시일			⑫조세감면결정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귀하 신고번호 : 위와 같이 신고를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서장 인					
구비서류 : 없 음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83호서식]

관세 · 특별소비세 · 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외국인투자	
						처리기간	
						3일	
①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영 문)					②국적		
외 국 인 투 자 기 업	③외국인투자신고일			④조세감면결정일 (관련문서번호)			
	⑤상호 또는 명칭						
	⑥도입자본제 설치장소						
면 제 신 청 내 역 현 황	구 분	면제신청 한도금액		금회 면제신청 자본재총액		면제신청 자본재 누계액	
	⑦법 제121조의3제1항 제1호에 의한 자본재	원 (USD 상당)		원 (USD 상당)		원 (USD 상당)	
	⑧법 제121조의3제1항 제2호에 의한 자본재	원 (USD 상당)		원 (USD 상당)		원 (USD 상당)	
⑨도입자본제 의 명세	HSK분류번호	품 명	규 격	수 량	공 급 자	가격(USD)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세관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	
※ 구비서류 1. 당해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당해 자본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 비 고 ⑦, ⑧란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면제가 배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자본재 면제한도 및 금회 면제신청 금액 · 금회 면제신청일 현재 누계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⑧란은 외국투자가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